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6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 : 김 윤 · 박홍배 · 이수진

최기상 · 김남희 · 남인순

소병훈 • 한정애 • 강선우

이언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,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 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들이 반쪽 아킬레스건과 같이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부당이득 을 취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, 공단이 조직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 을 직접 징수할 근거가 없어 조직은행이 얻은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, 해당 인체조직을 요양기관에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1조제1항 중 "제조업자·위탁제조판매업자·수입자·판매업자 및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수리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(이하 "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는"을 "제조업자·위탁 제조판매업자·수입자·판매업자,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수리업자·판매업자,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·수입업자·수리업자·판매업자·임대업자 및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조직은행(이하 "제조업자등"이라한다)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101조(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101조(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) ①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 등) ① -----약품의 제조업자 · 위탁제조판 -----제조업자·위탁제조판 매업자 · 수입자 · 판매업자 및 매업자 · 수입자 · 판매업자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 기 제조업자・수입업자・수리 기 제조업자・수입업자・수리 업자 · 판매업자 · 임대업자(이 업자 · 판매업자 · 임대업자 및 하 "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는 「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약제 ·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 관한 법률 | 에 따른 조직은행 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(이하 "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